

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

(대표발의: 최 은 하 의원)

의 안 번 호	25-123
--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: 2025. . .

발의자: 최은하, 강동오, 고병준, 권인순,
김승수, 남해석, 신종갑, 안미자,
오옥자, 장영준, 차해영, 채우진

1. 제정이유

백일해에 대한 면역이 완성되지 않은 영아의 보호를 위해 임산부 및 배우자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마포구 출산가정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백일해 예방접종의 지원대상 (안 제2조)
- 나. 예방접종 지원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- 다.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라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한 환수조치 (안 제5조)
- 마.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
3. 관계법령

- 가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, 제64조, 제71조
- 나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첨부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: 2025. 10. 1. ~ 10. 10.

나. 의견제출: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가정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대상) 백일해 예방접종(이하 “예방접종”이라 한다)의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
2. 제1호의 기간에 예방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의 산모 및 배우자
3.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3조(지원내용 및 절차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 예방접종이 국가 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,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.

② 예방접종은 임신 시마다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고,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및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.

제4조(예방접종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.

제5조(환수조치)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 등을 기록·관리 하여야 한다.

제6조(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)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, 그 외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.

제7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(약칭: 감염병예방법)

[시행 2025. 7. 31.] [법률 제20171호, 2024. 1. 30., 타법개정]

제25조(임시예방접종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(이하 “임시예방접종”이라 한다)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. 18., 2020. 8. 11., 2023. 6. 13.>

1.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
2.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.

제64조(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와 시·군·구가 부담할 경비)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와 시·군·구가 부담한다. <개정 2015. 7. 6., 2015. 12. 29., 2020. 8. 12., 2020. 9. 29., 2023. 6. 13., 2024. 1. 30.>

1.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

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

2.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

3.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

(생략)

제71조(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)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·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·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.

1.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: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

2. 장애인이 된 사람: 일시보상금

3. 사망한 사람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

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,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·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·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. <개정 2010. 1. 18., 2020. 8. 11.>

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,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개정 2010. 1. 18., 2020. 8. 11.>

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,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(약칭: 감염병예방법 시행령)

[시행 2025. 9. 16.] [대통령령 제35752호, 2025. 9. 16., 일부개정]

제20조(예방접종업무의 위탁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·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한다. <개정 2021. 8. 3., 2023. 8. 18.>

1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
2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(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·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1. 6., 2023. 8. 18.>

1.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

2.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

3.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

4.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

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5. 1. 6., 2020. 9. 11.>

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「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5조(예방접종비용)
-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(출산 후 2개월 이내 대상 포함)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 지원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1인별 지원 비용: 42,280원(백신비 + 시행비*)
*백신비: 22,670원, 시행비: 19,610원
- 접종대상

연도	대상자 구분	전체 대상자	접종 예상인원 (68%)	비고
1차년도(2026)	임산부 및 배우자	3,442명	2,341명	5% 증가 예상
2차년도(2027)		3,614명	2,458명	5% 증가 예상
3차년도(2028)		3,795명	2,581명	5% 증가 예상
4차년도(2029)		3,985명	2,710명	5% 증가 예상
5차년도(2030)		4,184명	2,845명	5% 증가 예상

* 혼인 증가, 출산 적령기 여성 확대, 정부 지원 강화 등으로 향후 5년간 출생아 수가 매년 5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
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세입						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○백일해 예방접종 지원비용	98,978	103,925	109,125	114,579	120,287	546,894
	소계(b)	98,978	103,925	109,125	114,579	120,287	546,894
□ 총 비용(a-b)		-98,978	-103,925	-109,125	-114,579	-120,287	-546,894

4. 재원조달 방안 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기타(구비)	98,978	103,925	109,125	114,579	120,287	546,894
합계		98,978	103,925	109,125	114,579	120,287	546,894

5. 덧붙이는 의견

- 대상자수는 사회경제적 변화 등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
- 접종대상 1인별 지원 비용은 백신비 및 시행비의 변동에 따라 변동 가능함

6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보건소 건강동행과 송혜민
연락처	02-3153-9995